조 례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336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손 병 화 (인)

2026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8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